

환불 규정

1. 워크숍

- 관련 법령에 따라 환불금이 책정됩니다.
 -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[시행 2021. 6. 1.][대통령령 제31711호, 2021. 6. 1., 일부개정] 제18조(교습비등의 반환 등) 3항
 - [별표4]

구분		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	
1.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		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	
2.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		학원설립·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	
3.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가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1)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	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	교습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				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				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				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	없음

		2) 독서 실의 경우	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	학습장소 사용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	나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	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	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				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 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(비고)
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- 환불 금액은 정가가 아닌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- 환불금은 출석 여부와 관계 없이 환불 신청을 해주신 시점과 실제 강의의 수업 시간 혹은 회차의 일자에 따라 책정됩니다.
- 오리엔테이션도 정규 강의에 포함되며 환불금 산정에 반영됩니다.

- ZOOM 실시간 온라인 강의+ 특강 + 팀 프로젝트는 모두 수업에 포함되므로 개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 하였더라도 경과 된 기간에 따라 위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 가능한 금액이 산정됩니다.

기타 환불 관련 사항

- 환불 의사를 밝힌 당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환불합니다.
 - 환불금액은 수업 시간 혹은 회차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-

환불 신청

- 프로그램 신청 취소는 홈페이지에서 주문한 상품 페이지에서 <주문취소>를 신청하시면 확인 후 환불처리를 진행해 드립니다.
- 환급은 카드사에 따라 확인까지 1주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환불 신청 확인 후 3일(영업일 기준) 이내 환불처리합니다.